



고려의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송종석

건성안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급여, 비급여 처방



급여/비급여 및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 등재심사

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정 액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적게 나오는 항목을 말한다. 급여항목임에도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요양 급여의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인공눈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하나는 급여로 되고 나머지 개수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비급여 항목은 의학적 근거는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항목으로 개인이 전액부담을 하며 병원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수가 차이가 있다. 정부의 정책이 비급여의 급여화로 안과의 여러 비급여

항목들이 최근 급여화되는 추세다.

기존의 의료행위가 아닌 새로운 행위도 도입되면 아래와 같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 과정을 거친다(그림 1). 1단계는 식약처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제품을 허가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심평원에서 이 행위가 이미 고시된 항목의 행위와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행위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행위인지를 심사하여 이미 고시된 행위 항목과 유사하면 기존 행위로 준용하게 되고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NECA라 알려진 보건 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3단계

효성을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의연에서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경우 임상에서는 그 행위를 비급여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4단계에서는 심평원에서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여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를 결정하고 최근에는 급여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높은 선별급여로 하여 급여 범주로 포함하기도 한다.

건성안 진단에서 새로운 의료행위의 도입 2017년에 발표된 DEWS의 건성안 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급여로 시행하고 있던 진단검사 이외에도 새로운 검사방법이 여럿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세 가지 중요한 진단방법 중 하나인 비침습 눈물막 파괴시간(non-invasive tear break-up time)을 측정하는 것은 현재 NECA에서 신의료기술 심사를 통과하였고 조만간 심평원에서 급여로 할지 선별급여나 비급여로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건성안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는 눈물오스몰농도 측정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2019년 5월부터 현재 본인부담금 80%인 선별급여로 시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마이봄샘 기능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meibography와 수성 눈물부족 건성안을 평가하기 위한 비침습적 눈물피눈이 검사는 최근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여 급여/비급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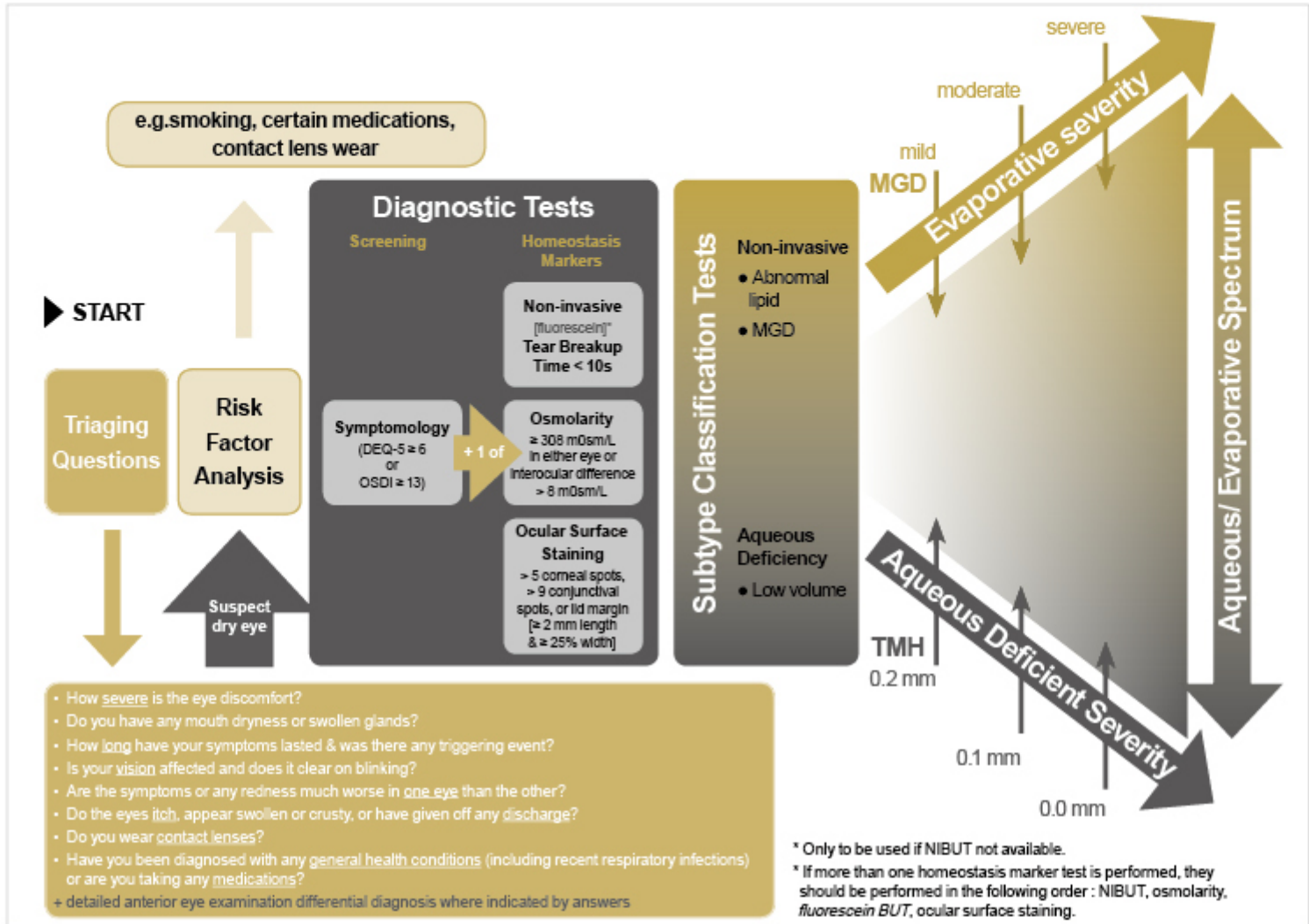


그림 2. TFOS dry eye workshop 2에서 제시한 건성안 진단 알고리즘. 이전과 달리 새로운 진단 검사행위가 여럿 추가되었다.

MMP-9 간이검사는 2017년에 본인부담금 80%의 선별급여로 고시되었고, 최근 급여확대 정책으로 건성안 진단 때 1회 인정하던 것을 2020년 8월 1일부터 진단과 경과 관찰에서 각 1회씩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건성안 환자 치료에서 비급여 행위와 새로운 의료행위 도입

건성안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대부분 급여로 인정되지만, 스테로이드 안약 중 loteprednol 점안액은 비급여 약제이다. 또한, lubrication을 촉진하는 Liposic gel, Siccafluid 점안제도 비급여로 처방을 하여야 한다. 심한 건성안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가혈청 안

약도 비급여 치료행위 중 하나이다. 누점 폐쇄술 행위와 재료는 모두 급여로 인정되며 과거에는 위아래 누점폐쇄를 동시에 하는 경우 삭감이 되었으나 동시 폐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급여 인정을 하고 있다.

최근 건성안 치료로 도입되는 비급여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건성안 환자의 유병률이 매우 높아 심평원에서도 신의료기술을 급여로 했을 때 건강보험재정에 어려움을 우려하여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두고 있다. 그런 행위로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온열마사지 요법”은 2016년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행전위)에서 결정하였고, “폐쇄 마이봄

선 가열 치료법”은 2017년에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하였다. 마이봄샘 기능장애 환자 치료를 위한 IPL은 “안구건조증 레이저광선치료”라는 이름으로 2019년 7월에 비급여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동안 건성안 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의료행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 현재 비급여 행위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음번 건성안 환자 치료를 위해 도입될 신의료기술 행위로는 “마이봄샘 probing”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eyefit*